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장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4년 4월 5일~ 4월 16일(12일간)

○ 검사위원

대표위원 : 김호숙(시의원)

위원 : 김현미(시의원) 위원 : 김동빈(시의원)

위원 : 김광민(세무사) 위원 : 신혜선(회계사)

위원 : 신현교(경력자) 위원 : 이상진(경력자)

위원 : 강철식(경력자) 위원 : 유홍종(경력자)

위원 : 구의청(경력자)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024년 4 월 16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12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과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김효숙

위원 김현미

위원 김광민

위원 신현교

위원 강철식

위원 구의청

위원 김동빈

위원 신혜선

위원 이상진

위원 유홍종

목 차

I . 결산검사 경과	1
II . 결산검사 결과	3
1. 총괄	3
2. 일반회계 결산	5
3. 특별회계 결산	8
4. 기금 결산	12
5. 재무제표 결산	13
6. 채권·채무 결산	15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6
8. 물품 증감 및 현재액	17
9. 성과보고서	17
10. 성인지 결산	17
III . 개선 및 권고사항	19
IV . 우수사례	55

□ 결산검사 개요

- (기간) ‘24. 4. 5(금) ~ 4. 16(화), 12일간
- (장소) 4층 김중서실(414호)
- (검사위원) 10명(시의원 3, 세무사 1, 공인회계사 1, 경력자 5)
- (대상)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 (범위)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위원현황 및 담당업무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대표위원	김효숙	▶ 결산검사 총괄	시의원
위원	김현미	▶ 세입·세출결산(특별회계) ▶ 성과보고서	시의원
위원	김동빈	▶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 성인지결산	시의원
위원	김광민	▶ 재무결산, 재무제표 ▶ 채권, 채무	세무사
위원	신혜선	▶ 재무결산, 재무제표 ▶ 채권, 채무	회계사
위원	신현교	▶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보조금	경력자
위원	이상진	▶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보조금	
위원	강철식	▶ 세입·세출결산(특별회계) ▶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보고서	
위원	유홍종	▶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보조금	
위원	구의청	▶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 검사방향

- 2023회계연도의 제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고, 의회승인으로 확정된 세출예산 중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정해진 용도와 금액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
-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의회에서의 재정통제 수단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검사내용

○ 세입·세출 결산 검사

- 세입·세출 결산 적부의 확인
-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검사
- 세입·세출 기본회계검사
- 예산 부당 편성 및 분식결산 여부 확인
-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결산검사
- 세입 부과·징수 검사
- 계약 관련 결산 검사

○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

-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적부의 확인 등

○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검사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형식 및 내용의 적정성 등 확인 및 검토 결과 후속 조치 확인 등

○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 검사

○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II

결산검사 결과

1. 총괄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2,413,024,72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28,923,58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211,375,129천원, 기타특별회계 272,726,016천원 임
-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은 2,163,154,568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36,043,64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75,296,630천원, 기타특별회계 251,814,290천원 임

(단위: 천원)

회계별	연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합계	2023	2,410,427,625	2,413,024,727	2,163,154,568	249,870,159
	2022	2,321,789,008	2,350,495,138	2,106,411,523	244,083,615
	증감	88,638,617	62,529,589	56,743,045	5,786,544
일반 회계	2023	1,932,118,990	1,928,923,581	1,736,043,647	192,879,932
	2022	1,910,944,398	1,934,689,208	1,725,552,534	209,136,674
	증감	21,174,592	△5,765,627	10,491,113	△16,256,742
공기업 특별 회계	2023	206,635,746	211,375,129	175,296,630	36,078,498
	2022	143,928,498	149,105,303	128,503,543	20,601,760
	증감	62,707,248	62,269,826	46,793,087	15,476,738
기타 특별 회계	2023	271,672,888	272,726,016	251,814,290	20,911,726
	2022	266,916,112	266,700,627	252,355,446	14,345,181
	증감	4,756,776	6,025,389	△541,156	6,566,545

※ 회계별 총계금액으로 합계금액과 구성항목별 합계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결산상 잉여금 내역

- 2023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총 249,870,15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2,879,932천원, 공기업특별회계 36,078,498천원, 기타특별회계는 20,911,726천원 임
- 결산상 잉여금 중 2024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164,039,441,395천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285,413천원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78,545,304천원 임

(단위: 천원)

회계별	연도	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2023	249,870,159 (24,715,192)	88,118,879 (13,780,347)	62,367,511 (79,163)	13,553,051 (10,855,682)	7,285,413	78,545,304
	2022	244,083,615	82,507,787	34,913,754	29,038,184	15,146,755	82,477,135
	증감	5,786,544 (△24,715,192)	5,611,092 (△13,780,347)	27,453,757 (△79,163)	△15,485,133 (△10,855,682)	△7,861,341	△3,931,831
일반 회계	2023	192,879,932 (24,715,192)	72,815,672 (13,780,347)	38,029,946 (79,163)	12,004,760 (10,855,682)	7,247,534	62,782,020
	2022	209,136,674	76,804,155	23,919,792	27,686,960	14,907,771	65,817,996
	증감	△16,256,742	△3,988,483	14,110,154	△15,682,200	△7,660,237	△3,035,976
공기업 특별 회계	2023	36,078,498	12,053,900	12,477,786	-	-	11,546,812
	2022	20,601,760	5,021,460	5,563,956	-	-	10,016,344
	증감	15,476,738	7,032,440	6,913,830	-	-	1,530,468
기타 특별 회계	2023	20,911,726	3,249,306	11,859,779	1,548,290	37,879	4,216,472
	2022	14,345,181	682,172	5,430,006	1,351,224	238,984	6,642,795
	증감	6,566,545	2,567,134	6,429,773	197,066	△201,105	△2,426,323

※ 다음연도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2. 일반회계 결산

□ 세입

- 세입결산 수납액은 1,928,923,581천원으로, 전년 대비 5,765,627천원이 감소,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951,237천원 증가한 1,976,690,644천원임
- 이 중 정리보류액은 3,218,309천원으로 전년대비 342,446천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4,548,753천원으로 전년대비 6,374,417천원 증가함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㉑	징수결정액 ㉒	수 납 액 ㉓	정 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㉓/㉑	㉓/㉒
2023	1,932,118,990	1,976,690,644	1,928,923,581	3,218,309	44,548,753	99.8	97.6
2022	1,910,944,398	1,975,739,407	1,934,689,208	2,875,863	38,174,336	101.2	97.9
증감	21,174,592	951,237	△5,765,627	342,446	6,374,417	△1.4	△0.3

□ 세출

- 세출결산 지출액은 1,736,043,647천원으로, 전년대비 10,491,113천원 순증, 예산집행률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89.9%임
-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147,565,572천원, 보조금 반납액 6,848,70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661,065천원임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 ㉓	보조금 반납액 ㉔	집행잔액 (㉑-㉒-㉓-㉔)	집행률 (㉒/㉑)
2023	1,932,118,990	1,736,043,647	147,565,572	6,848,705	41,661,065	89.9
2022	1,910,944,398	1,725,552,534	128,410,907	15,764,429	41,216,528	90.3
증감	21,174,592	10,491,113	19,154,665	-8,915,724	444,537	△0.4

□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0건 333,148천원, 예산이체는 525건 88,556,145천원, 예산변경은 57건 4,813,957천원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변경이 최소화되어야 함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단위: 건, 천원)

부서	건수	전용금액	사 유
8개*	10	333,148	▶ 근로자보수 등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또는 동일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전용

* 운영지원과, 농업정책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행정과, 공원관리과

- 예산이체

(단위: 건, 천원)

건수	예 산 액	이 체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525	88,556,145	88,556,145	88,556,145	▶ 조직개편

- 예산변경

(단위: 건, 천원)

건수	예 산 액	변 경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57	253,646,248	4,813,957	4,813,957	▶ 세부사업간,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과부족 예산 조정

□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발생에 신속 대응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4건 증가하였고 지출결정액은 9,794,376천원이 감소하였음

-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지출결정액 462,632천원은 불용 됨

(단위: 천원)

구분	통계목(건수)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2023	합계 (46건)	7,345,404	4,705,990	3,965,432	277,926	462,632
	일반예비비 (33)	4,345,404	2,589,598	1,951,345	277,926	360,327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건)	3,000,000	2,116,392	2,014,087	-	102,305
2022	예비비 (32건)	17,778,208	14,500,366	12,888,657	-	1,611,709
증감	14	△10,432,804	△9,794,376	△8,923,225	277,926	△1,149,077

□ 채무부담 행위 : 없음

□ 금고의 결산

(단위: 원)

수 입 액(㉠) (세입결산액)	지 출 액(㉡) (세출결산액)	잔 액(㉠-㉡) (금고보관액)
1,928,923,581,699	1,736,043,647,170	192,879,934,529

3. 특별회계 결산

□ 세입

- 세입 징수결정액은 492,998,577천원으로, 전년대비 70,970,893천원 증가, 수납액은 484,101,145천원으로, 전년대비 68,295,215천원 증가함
- 미수납액은 8,830,477천원으로, 전년대비 2,726,673천원이 증가, 정리보류액은 66,956천원으로 전년대비 110,994천원 감소함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정리보류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률 ((나)/(가))
2023(I)		478,308,636	492,998,577	484,101,145	66,956	8,830,477	98.2
공 기 업	소계(3개)	206,635,746	215,887,595	211,375,129	-	4,512,466	97.9
	상 수 도 사 업	130,696,468	133,456,076	131,623,094		1,832,982	98.6
	하 수 도 사 업	61,141,203	62,982,995	60,305,392		2,677,604	95.7
	공 영 개 발 사 업	14,798,075	19,448,524	19,446,643		1,881	100.0
기 타	소 계(14개)	271,672,888	277,110,982	272,726,016	66,956	4,318,009	98.4
	의 료 급 여 기 금	30,105,112	30,191,513	30,122,281		69,232	99.8
	주 택 사 업	7,343,248	8,258,611	8,238,478		20,133	99.8
	도 시 개 발	18,320,071	18,354,504	18,347,809		6,695	100.0
	기 반 시 설	11,035	11,035	11,035			100.0
	학교용지부담금	4,050,953	4,051,040	4,051,040			100.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526,002	530,221	530,221			100.0
	소 방	69,746,600	69,750,029	69,749,699		331	100.0
	수 질 개 선	820,808	822,529	822,529			100.0
	특 정 자 원 지 역 자 원 시 설 세	17,849,081	17,875,774	17,875,774			100.0
	광 역 교 통 시 설	1,374,280	2,714,079	1,039,793		1,674,286	38.3
	자 치 분 권	18,770,740	18,669,843	18,669,843			100.0
	주 차 의 자 원 기 합 의 전 및 양 어 유 지 개 발 사 업	12,467,032	12,475,343	12,475,343			100.0
	폐 기 물 처 리 설 시	69,664,729	69,665,324	69,665,324			100.0
	교 통 사 업	20,623,199	23,741,137	21,126,847	66,956	2,547,333	89.0
2022(II)		410,844,610	422,027,684	415,805,930	177,950	6,103,804	98.5
증감(I-II)		67,464,026	70,970,893	68,295,215	△110,994	2,726,673	△0.3

□ 세출

- 세출결산 지출액은 427,110,921천원으로, 전년대비 46,251,932천원 증가, 예산집행률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89.3% 임
-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41,189,061천원, 보조금 반납액 37,87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불용액)은 9,970,772천원으로, 전년 대비 1,727,047천원 감소함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㉔	지출액 ㉕	다음연도 이월액 ㉖	보조금 반납액 ㉗	집행잔액 (㉔-㉕-㉖-㉗)	집행률 (㉕/㉔)
2023(Ⅰ)		478,308,635	427,110,921	41,189,061	37,879	9,970,772	89.3
공 기 업	소 계	206,635,746	175,296,631	24,531,686	-	6,807,430	84.8
	상 수 도 사 업	130,696,468	115,794,560	12,373,776		2,528,133	88.6
	하 수 도 사 업	61,141,203	49,974,383	6,996,807		4,170,013	81.7
	공영개발사업	14,798,075	9,527,688	5,161,103		109,284	64.4
기 타	소 계	271,672,889	251,814,290	16,657,375	37,879	3,163,344	92.7
	의료급여기금	30,105,112	29,999,419			105,693	99.6
	주 택 사 업	7,343,248	6,968,365			374,882	94.9
	도 시 개 발	18,320,071	18,143,069			177,002	99.0
	기 반 시 설	11,035	10,930			105	99.0
	학교용지부담금	4,050,953	4,010,733			40,220	99.0
	발 전 소 주 변 지역지원사업	526,002	505,792		20,210	0	96.2
	소 방	69,746,600	65,798,814	3,055,806	1	891,979	94.3
	수 질 개 선	820,808	546,898	250,000	17,668	6,241	66.6
	특정자원지역 자 원 시 설 세	17,849,081	7,632,889	10,200,000		16,192	42.8
	광역교통시설	1,374,280	1,039,793			334,487	75.7
	자 치 분 권	18,770,740	18,053,006	54,550		663,184	96.2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 부지개발사업	12,467,032	12,233,217	195,000		38,815	98.1
	폐 기 물 처 리 설 시	69,664,729	68,116,438	1,548,290			97.8
	교 통 사 업	20,623,199	18,754,927	1,353,729		514,542	90.9
2022(Ⅱ)		410,844,610	380,858,989	18,048,818	238,984	11,697,819	92.7
증감(Ⅰ-Ⅱ)		67,464,025	46,251,932	23,140,243	△201,105	△1,727,047	△3.4

□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소방 특별회계 등 97건에 10,484,300천원이고, 예산 변경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에 3,000천원 임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없음

- 예산이체

(단위: 건, 천원)

회계명	건수	예산액	이 체 금 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97	10,484,300	10,484,300	10,484,300	
소방	41	1,558,538	1,558,538	1,558,538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수질개선	5	729,093	729,093	729,093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	14,000	14,000	14,000	
자치분권	47	2,838,122	2,838,122	2,838,122	
교통사업	3	5,344,547	5,344,547	5,344,547	

- 예산변경

(단위: 건, 천원)

회계명	건수	예산액	변경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주택사업	1	285,365	3,000	3,000	세부사업 간,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과부족 예산 조정

□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연도	통계목(건수)	예산액	지출결정액 ㉔	지출액 ㉕	이월액 ㉖	집행잔액 (㉗=㉔-㉕-㉖)
2023	일반예비비(1건)	568,130	65,072	65,072	-	-
2022	일반예비비(1건)	613,849	99,692	99,692	-	-
증감	-	△45,719	△34,620	△34,620	-	-

□ 금고의 결산

(단위: 원)

구 분		수 입 액(㉔) (세입결산액)	지 출 액(㉕) (세출결산액)	잔 액(㉔-㉕) (금고보관액)
합 계(I+II)		484,101,146,002	427,110,920,920	56,990,225,082
공기업특별회계 I		211,375,129,170	175,296,630,723	36,078,498,447
	상 수 도	131,623,094,022	115,794,559,657	15,828,534,365
	하 수 도	60,305,391,914	49,974,382,850	10,331,009,064
	공 영 개 발	19,446,643,234	9,527,688,216	9,918,955,018
기타특별회계 II		272,726,016,832	251,814,290,197	20,911,726,635
	의 료 급 여	30,122,280,510	29,999,418,530	122,861,980
	주 택 사 업	8,238,477,511	6,968,365,410	1,270,112,101
	도 시 개 발	18,347,808,853	18,143,069,240	204,739,613
	기 반 시 설	11,035,206	10,930,000	105,206
	학 교 용 지 부 담 금	4,051,040,370	4,010,732,570	40,307,80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530,220,713	505,791,810	24,428,903
	소 방	69,749,698,671	65,798,813,990	3,950,884,681
	수 질 개 선	822,529,350	546,898,040	275,631,310
	특정자원지역자원 시 설 세	17,875,774,487	7,632,888,780	10,242,885,707
	광 역 교 통 시 설	1,039,793,270	1,039,793,140	130
	자 치 분 권	18,669,843,459	18,053,005,724	616,837,735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착륙 및 양양 부지개발사업	12,475,342,790	12,233,217,210	242,125,580
	폐 기 물 처 리 시 설	69,665,324,261	68,116,438,400	1,548,885,861
	교 통 사 업	21,126,847,381	18,754,927,353	2,371,920,028

4. 기금 결산

- 2023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27,375,501천원으로, 전년(670,166,100천원) 대비 57,209,402천원(8.5%) 증가하였음
- 2023연도 조성액은 223,368,427천원이며 사용액은 166,159,024천원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말 조 성 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16개)	670,166,100	57,209,402	223,368,427	166,159,024	727,375,501
자 활 기 금	1,014,763	△17,507	69,053	86,560	997,256
식 품 진 흥 기 금	1,648,249	43,804	130,197	86,393	1,692,053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93,868	△92,780	195,840	288,620	101,088
농 업 발 전 기 금	20,121,840	△166,758	3,150,162	3,316,920	19,955,082
중소기업육성기금	4,843,699	△112,077	2,173,831	2,285,908	4,731,622
재 난 관 리 기 금	18,607,426	1,946,593	7,629,820	5,683,227	20,554,019
재 해 구 호 기 금	9,972,345	1,942,531	3,787,816	1,845,285	11,914,876
투 자 진 흥 기 금	25,040,554	377,441	379,271	1,830	25,417,995
양 성 평 등 기 금	1,018,409	21,398	725,196	703,797	1,039,807
지 역 개 발 기 금	219,878,229	6,082,116	41,955,735	35,873,618	225,960,346
남북교류협력기금	1,170,463	29,934	29,934		1,200,397
사 회 투 자 기 금	974,976	△974,976	72,710	1,047,687	
옥외광고발전기금	628,674	249,695	691,823	442,128	878,3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5,052,605	29,004,215	143,501,266	114,497,051	394,056,8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18,730,181	18,730,181	-	18,730,181
고 향 사 랑 기 금	-	145,592	145,592	-	145,592

5. 재무제표 결산

□ 총괄

○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A)	총부채(B)	비율	순자산(A-B)	총비용(C)	총수익(D)	운영결과(C-D)
2023년	9,570,019,805	495,398,295	5.2	9,074,621,510	1,703,994,549	1,653,115,814	50,878,735
2022년	9,595,041,859	518,461,180	5.4	9,076,580,679	1,652,119,611	1,702,033,953	△49,914,342
증 감	△25,022,054	△23,062,885	△0.2	△1,959,169	51,874,938	△48,918,139	100,793,077

□ 재정상태 분석

○ 자산은 9,570,019,805천원으로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은 증가했으나, 유동자산 감소로 전년대비 25,022,054천원(0.3%) 감소함

○ 부채는 495,398,295천원으로 우발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손해배상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3,062,885천원(4.4%) 감소함

(단위: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668,483,408	6.97	480,897,335	5.02
투 자 자 산	56,546,284	0.59	96,615,796	1.01
일 반 유 형 자 산	678,223,781	7.07	723,333,367	7.56
주 민 편 의 시 설	2,580,207,570	26.89	2,635,335,503	27.54
사 회 기 반 시 설	5,596,621,233	58.33	5,617,379,794	58.70
기타비유동자산	14,959,583	0.15	16,458,010	0.17
자 산 총 계	9,595,041,859	100	9,570,019,805	100
유 동 부 채	67,624,688	13.04	81,953,359	16.54
장 기 차 입 부 채	331,679,805	63.97	324,041,825	65.41
기타비유동부채	119,156,687	22.99	89,403,111	18.05
부 채 총 계	518,461,180	100	495,398,295	100
고 정 순 자 산	8,652,183,053	95.32	8,781,000,125	96.77
특 정 순 자 산	101,493,557	1.12	125,446,742	1.38
일 반 순 자 산	322,904,069	3.56	168,174,643	1.85
순 자 산 총 계	9,076,580,679	100	9,074,621,510	10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9,595,041,859		9,570,019,805	

□ 재정운영 분석

○ 총수익은 1,653,115,814천원으로 전년대비 48,918,139천원(2.9%) 감소함

-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취득세 및 그 영향을 받는 지방세 감소

<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1		2022		2023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708,062,222	100	1,702,033,953	100	1,653,115,814	100
자체조달수익 ¹⁾	1,096,748,446	64.21	1,094,220,824	64.29	1,041,051,849	62.98
정부간이전수익 ²⁾	582,256,275	34.09	575,333,045	33.80	581,629,575	35.18
기타수익 ³⁾	29,057,501	1.70	32,480,084	1.91	30,434,390	1.84

1)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2) 지방교부세수익, 보조금수익 등

3) 전입금수익 등

○ 총비용은 1,703,994,549천원으로 전년대비 51,874,938천원(3.1%) 증가함

- (민간등이전비용) 보조 및 출연기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증가

- (운영비)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 비용이 다수

- (인건비) 공무원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인상 등 반영

< 최근 3년간 비용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1		2022		2023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544,926,189	100	1,652,119,611	100	1,703,994,549	100
인건비 ¹⁾	218,735,397	14.16	235,784,545	14.27	261,919,738	15.37
운영비 ²⁾	484,146,896	31.34	544,332,867	32.95	543,643,365	31.91
정부간이전비용 ³⁾	111,507,473	7.22	117,650,232	7.12	106,216,823	6.23
민간등이전비용 ⁴⁾	587,738,193	38.04	604,716,642	36.60	632,735,821	37.13
기타비용 ⁵⁾	142,798,230	9.24	149,635,325	9.06	159,478,802	9.36

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3)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6. 채권·채무 결산

□ 채권현황

- 202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7,024,585천원으로, 전년대비 287,228천원 증가 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941,515천원, 기타특별회계 465,891천원, 기금 12,617,179천원임

(단위: 천원)

회계별 구분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현재액
			계(㉔-㉕)	발생액(㉔)	소멸액(㉕)	
합 계		16,737,356	287,228	4,113,877	3,826,648	17,024,585
일반회계		4,012,254	△70,740	-	70,740	3,941,515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575,003	△109,111	112,641	221,753	465,891
	주택사업	575,003	△109,111	112,641	221,753	465,891
기금	소계	12,150,100	467,079	4,001,235	3,534,156	12,617,179
	자활기금	367,059	9,709	65,285	55,576	376,769
	농업발전기금	11,753,040	487,370	3,905,950	3,418,580	12,240,410
	사회투자기금	30,000	△30,000	30,000	60,000	-

□ 채무현황

- 2023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68,797,630천원으로, 전년대비 696,210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0,349,875천원, 기타특별회계 44,195,000천원, 기금 214,252,755천원임

(단위: 천원)

회계별 구분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현재액
			계(㉔-㉕)	발생액(㉔)	상환소멸액(㉕)	
합 계		369,493,840	△696,210	38,161,490	38,857,700	368,797,630
일반회계		114,736,125	△4,386,250	750,000	5,136,250	110,349,875
기타 특별 회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44,195,000	-	-	-	44,195,000
기금	지역개발기금	210,562,715	3,690,040	37,411,490	33,721,450	214,252,755

□ 세입세출외 현금

- 2023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6,127,161천원으로, 전년대비 4,339,680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현재액
		계(㉗-㉙)	증가액(㉗)	지출액(㉙)	
합계	1,787,481	4,339,679	58,431,212	54,091,533	6,127,161
보증금	28,646	-3,072	-	3,072	25,574
보관금	1,582,604	3,004,655	55,841,942	52,837,287	4,587,259
잡종금 등 기타	176,231	1,338,098	2,589,271	1,251,173	1,514,328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공유재산 현황

- 202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903,164,961천원으로, 전년대비 233,120,007천원이 증가하였고,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7,155,027,948천원, 일반재산 67,222,294천원, 건설중인 재산 680,914,719천원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현재액
			계(㉗-㉙)	증(취득)(㉗) (매입·무상양수등)	감(처분)(㉙) (매각·무상양여등)	
계		7,670,044,954	233,120,007	610,157,952	377,037,945	7,903,164,961
행정 재 산	소 계	6,878,984,714	276,043,234	380,437,891	104,394,657	7,155,027,948
	공용재산	1,771,032,104	153,874,766	171,718,730	17,843,964	1,924,906,870
	공공용재산	5,050,113,446	126,185,717	207,047,752	80,862,035	5,176,299,163
	기업용재산	57,566,699	△4,517,248	1,171,409	5,688,657	53,049,451
	보존용재산	272,465	500,000	500,000		772,464,490
일반재산		47,164,887	20,057,407	20,226,837	169,430	67,222,294
건설중인재산		743,895,353	-62,980,633	209,493,224	272,473,857	680,914,719

8.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정수물품 현황

- 2023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1,825개, 보유액 138,006,314천원으로, 전년대비 수량은 225개 증가하고, 금액은 1,286,399천원 증가함

(단위: 개, 천원)

구분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보유액
		증(취 득)			감(처 분)			
		소계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수량	1,600	240	201	39	15	6	9	1,825
금액	136,719,915	3,186,348	3,140,179	45,869	1,899,949	42,232	1,846,400	138,006,314

9. 성과보고서

- 345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327개(94.8%), 미달성 18개(5.2%)로 초과달성 (130% 이상) 49개, 달성(100~130% 미만) 278개, 미달성(100% 미만) 18개임

(단위: 개, 천원)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9	182	345	49	278	18	1,987,857,937	1,977,907,980	9,949,957

10. 성인지결산

□ 성인지 결산 총괄표

-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5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6,202,515천원 중 지출액은 52,705,723천원이고, 집행률은 93.78%임

(단위: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51	56,202,515	52,705,723	93.78
일반회계	51	56,202,515	52,705,723	93.78

□ 조직별 현황

(단위: 개, 천원, %)

구분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51	56,202,516	52,705,723	93.78
본청		44	55,032,224	51,562,475	93.70
	본청	1	407,557	362,497	88.94
	운영지원과	1	407,557	362,497	88.94
	기획조정실	3	3,940,149	3,940,149	100.00
	청년정책담당관	3	3,940,149	3,940,149	100.00
	시민안전실	4	377,879	333,971	88.38
	안전정책과	2	270,411	243,073	89.89
	사회재난과	2	107,468	90,898	84.58
	미래전략본부	3	11,342,440	8,599,248	75.81
	지역균형발전과	2	9,368,932	6,626,422	70.73
	지능형도시과	1	1,973,508	1,972,826	99.97
	문화체육관광국	2	189,920	189,920	100.00
	문화예술과	1	180,000	180,000	100.00
	체육진흥과	1	9,920	9,920	100.00
	보건복지국	20	34,280,221	33,664,918	98.21
	복지정책과	1	170,000	170,000	100.00
	여성가족과	9	19,009,350	18,508,182	97.36
	아동청소년과	4	791,868	773,905	97.73
	노인장애인과	5	14,078,598	13,984,353	99.33
	감염병관리과	1	230,405	228,478	99.16
	경제산업국	6	1,840,560	1,839,422	99.94
	경제정책과	1	20,000	20,000	100.00
	기업지원과	2	1,119,669	1,119,627	100.00
	투자유치단	1	169,720	169,720	100.00
	농업정책과	1	348,571	347,524	99.70
	로컬푸드과	1	182,600	182,550	99.97
	건설교통국	2	2,487,500	2,470,208	99.30
	교통과	2	2,487,500	2,470,208	99.30
	환경녹지국	3	165,998	162,142	97.68
	환경정책과	1	20,000	20,000	100.00
	자원순환과	1	60,000	56,144	93.57
	산림공원과	1	85,998	85,998	100.00
보건소		3	359,485	356,661	99.21
	보건소	3	359,485	356,661	99.21
	보건행정과	1	168,300	168,300	100.00
	건강증진과	2	191,185	188,361	98.52
농업기술센터		2	110,100	110,100	100.00
	농업기술센터	2	110,100	110,100	100.00
	지도기획과	2	110,100	110,100	100.00
시립도서관		2	700,707	676,487	96.54
	시립도서관	2	700,707	676,487	96.54
	시립도서관	2	700,707	676,487	96.54

① 예비비 사용 집행관리 철저(자연재난과 등 7개 부서)	21
② 초과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 미흡(세정과, 세원관리과)	22
③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자치행정과 등 9개 부서)	23
④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회계과)	25
⑤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미흡(예산담당관, 회계과)	27
⑥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개선권고(전부서)	28
⑦ 세입금 미수납액 감축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세원관리과)	31
⑧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세원관리과)	32
⑨ 세출예산 이월액 감축 방안 노력 부족(전부서)	33
⑩ 세출예산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지역균형발전과, 자원순환과)	35
⑪ 예산 전용 최소화 노력 필요(운영지원과 등 8개 부서)	36
⑫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누락(농업정책과)	37
⑬ 성인지 예산사업 사업유형 분류 철저(예산담당관)	38
⑭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자체노력 철저(전부서)	40
⑮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교통과)	43
⑯ 지역발기금 예탁금 세입 처리 시 오류(예산담당관)	44
⑰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상 기재사항 누락(건축과)	45
⑱ 관련 법령 해석 오류로 예산 편성 부적정(세정과)	46
⑲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부적정(건축과)	48
⑳ 도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 시, 감액 처리 철저(회계과)	49
㉑ 유형자산 처분손익 제대로 인식하는지 검토 필요(회계과)	51
㉒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전략기획과 등 3개 부서)	52

1 예비비 사용 집행관리 철저(자연재난과 등 7개 부서)

□ 현황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나, 지출결정 후 전액 불용한 사례가 있음

<지출 결정 후 전액 미지출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지출 결정일	지출 결정액	지출액	사유
자연재난과	재해지도 작성	23.8.31	18,843	-	기존예산 사용
자치행정과	주요시정 역점시책관리	23.8.23	27,505	-	국비 대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비용)
관광진흥과	관광활성화 홍보	23.8.11	11,580	-	
아동청소년과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23.8.29	540	-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작성 미흡>

(단위 : 천원)

부서	세부내용	지출 결정액	결산서상 지출액	실제 지출액	사유
자연재난과	재난대응체계구축	440,000	-	412,947	결산서 상 지출액 입력누락
체육진흥과	시민운동장 부대시설 확충 사업(전환)	38,000	-	38,000	
아름동	아름동 주민센터 운영	4,627	-	4,627	
고운동	고운동복합 커뮤니티센터(남측)관리	31,473	-	31,473	

□ 문제점

-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기존 예산 대체 또는 국비 지원 등으로 불용되고, 일부 사업은 집행을 하였음에도 결산서 작성시 미집행으로 착오 기재 하는 사례 발생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에만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개선 필요

2 초과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 미흡(세정과, 세원관리과)

□ 현황

- 2023 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세입금이 2,59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09백만원 대폭 감소 되었으나, 여전히 초과세입금이 높은 수준임

<2022년 초과세입 등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초과세입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321,789	2,350,495	28,706	53,771	82,477

<2023년 초과세입 등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초과세입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410,428	2,413,025	2,597	75,973	78,570

□ 문제점

- 당해 연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 세입은 예산총계주의 및 균형 예산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집행하여야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초과세입을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초과세입 발생 시 적시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할 것을 권고

3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자치행정과 등 9개 부서)

□ 현황

- 세출예산 결산액은 2조 1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56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집행률은 89.7%로 전년대비 1%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은 사업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전액 미집행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예산편성 후 80% 이상 불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불용액 (B)	불용률 (B/A×100)
자치행정과	보전지출	4,952	687	4,264	86
로컬푸드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포상금	300	-	300	100
동물위생방역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7,280	-	7,280	100
아동청소년과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	9,350	1,200	8,150	87
노인장애인과	공영장례 지원	6,400	-	6,400	100
노인장애인과	감각적 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지원	4,790	-	4,790	10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0,000	-	10,000	100
보건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2,857	-	2,857	100
주택과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1,530	-	1,530	100
물관리정책과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20,000	-	20,000	100
초광역지원과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제도 정비 및 개선	12,600	2,404	10,195	80

□ 문제점

- 편성된 예산이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도록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시 반드시 감액·조정 처리할 것을 권고
- 또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정작 시급성 있는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

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회계과)

□ 현황

-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법령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계약보증·입찰보증·하자보수보증 등에 대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해연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총 5,700백만원으로, 종류별 내역은 보증금 26백만원, 보관금 4,344백만원, 잡종금 등 기타 1,330백만원임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단위 :천원)

종류별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계(㉡=㉢-㉣)	증가액(㉢)	지출액(㉣)	
합계	소 계	1,545,141	4,155,241	50,910,385	46,755,144	5,700,382
	장 기	50,013	△30,499	-	30,499	19,514
	단 기	1,495,128	4,185,740	50,910,385	46,724,644	5,680,868
보증금	소 계	28,643	△3,072	-	3,072	25,571
	장 기	20,097	△3,072	-	3,072	17,025
	단 기	8,546	-	-	-	8,546
보관금	소 계	1,491,200	2,853,151	49,084,334	46,231,183	4,344,351
	장 기	29,916	△27,427	-	27,427	2,489
	단 기	1,461,284	2,880,578	49,084,334	46,203,756	4,341,862
잡종금 등 기타	소 계	25,298	1,305,163	1,826,051	520,889	1,330,460
	장 기	-	-	-	-	-
	단 기	25,298	1,305,163	1,826,051	520,889	1,330,460

□ 문제점

-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귀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보관금 등 28건은 반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귀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 천원)

현금종류	건수	금액
보관금	18	66,649
보증금	3	11,589
잡종금기타	7	182

□ 개선 및 권고사항

- 2023회계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반환하거나 시에 귀속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함

5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미흡(예산담당관, 회계과)

□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는 등 연중 예산의 전략적 활용에 노력해야 함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계상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본예산액(1)	-	100,000,000	40,000,000
1차 추경	65,817,996	127,582,570	173,552,496
2차 추경	-	191,404,631	-
3차 추경	-	-	173,552,516
결산액(2)	65,817,996	191,404,632	173,552,516
차액(1-2)	△65,817,996	△91,404,632	△133,552,516

□ 문제점

- 2023회계연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자원 편성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므로써, 세입자원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저해

□ 개선 및 권고사항

-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37% 가량 감소한 부분은 바람직하나 예산총계주의와 건전재정을 위해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결산상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것을 권장함

6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개선권고(전부서)

□ 현황

- 세종시의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143,241백만원으로, 2023년 세출결산액 1,987,857백만원 중 지방보조금 집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로 타 시도 평균 비율 2.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집행액은 매년 증가해 왔고, 특히 2023년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세종시 지방보조금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350,969	1,552,731	1,899,543	1,977,908	1,987,857
지방보조금 (민간)(B)	92,912	97,450	119,182	135,761	143,241
비율(%) (B/A×100)	6.9	6.3	6.3	6.8	7.2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 미흡 및 매우 미흡 사업 현황(붙임 참조)

□ 문제점

-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년도 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지 차차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원칙적으로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게 되어 있으나
- 미흡 이하(C등급, D등급) 총 56개 사업 중 21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세출예산이 편성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당해연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차년도 보통교부세 감액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자립 관점에서 볼 때 지방보조금을 축소 운영함이 바람직
- 연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운용평가 결과 C등급(미흡) 및 D등급(매우미흡) 사업은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하되,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세부 기준을 정하여 처리할 것을 권고함

붙임

'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결과 '24년 예산 반영현황

□ C등급(미흡, 45개), D등급(매우미흡, 11개) 총 56개 중 21개 사업 '24년 예산 반영
(단위 : 천원)

연도	부서명	예산편성목	부기사업명	2022년 평가등급	2024년 예산반영
1	안전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방범대 순찰차 차량보험	C	7,500
2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민주화운동 기념	C	9,000
3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적십자봉사회 전국 봉사원 대회 참가	C	2,880
4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은퇴 은행	C	4,200
5	여성가족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C	20,000
6	노인장애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취미교실 운영	C	27,000
7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	C	160,800
8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청각,언어장애인 프로그램	C	18,750
9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C	97,444
10	경제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C	100,000
11	기업지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기업인 활성화 사업	C	7,500
12	소상공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C	86,400
13	농업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인단체 주관 행사지원	C	83,000
14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쌀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	C	15,000
15	농업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밥맛 좋은쌀 경진대회	C	10,500
16	동물위생방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친환경 축사시설장비지원	C	100,000
17	동물위생방역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폐축사 철거 지원	C	10,500
18	농업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기계 지원사업	C	225,000
19	보건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입식테이블 설치	C	10,000
20	기업지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기업인 역량강화	C	7,200
21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연소자재지원	D	35,000

7 세입금 미수납액 감축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세원관리과)

□ 현황

- 2022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총 42,289백만원이며, 그 중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15,919백만원임
-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총 48,8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5.6% 증가 되었으며, 그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18,3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5.5%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미수납액	납세태만(비율)	납기미도래, 행방불명 등(비율)
2022 회계연도	계	42,289	15,919(37.6%)	26,371(62.4%)
	일반회계	38,174	15,420	22,735
	특별회계	4,115	499	3,636
2023 회계연도	계	48,867	18,387(37.6%)	30,480(62.4%)
	일반회계	44,549	18,386	26,163
	특별회계	4,318	1	4,317

□ 문제점

- 미수납액 사유 중 행방불명, 폐업, 부도 및 소송 계류 등은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가 어려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납세 태만에 따른 미수납액 증가는 체납 방안 노력과 적극적인 징수 독려 부족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장기 고액체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채권확보 노력 및 분할 납부 유도 등의 실효성 있는 미수납액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
- 또한, 일반회계 차량 과태료의 경우 재산 압류 등 징수율 제고에 필요한 노력을 적극 실시하고, 자진납세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제도 홍보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8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세원관리과)

□ 현황

- 2022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은 총 22,735백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1,523백만원임

(‘22.12.31.기준/백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액	채권 확보	채권 미확보	체납액			정리액	채권 확보	채권 미확보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계			
12,475	10,260	22,735	10,272	9,184	3,279	3,659	7,864	11,523	4,181	5,723	2,141

- 2023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은 총 27,932 백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4,352 백만원임

(‘23.12.31.기준/백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액	채권 확보	채권 미확보	체납액			정리액	채권 확보	채권 미확보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계			
15,469	12,463	27,932	13,738	11,041	3,153	6,490	7,862	14,352	4,435	7,049	2,868

□ 문제점

-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

* 2022년말 체납액 : 34,258백만원, 2023년말 체납액 : 42,284 백만원

- 특히, 2023년도에는 고질적인 상습 고액체납자*가 더욱 늘어,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채권확보, 신상정보 공개 등)이 요구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 2022년말 381명, 2023년말 486명

□ 개선 및 권고사항

- 고액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채권확보 및 신상 정보공개를 강화함은 물론 조기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금 할인제도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 담당인력 보강을 통한 체납 기동반 운영 등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액 감축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고함

9 세출예산 이월액 감축 방안 노력 부족(전부서)

□ 현황

-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유를 장기계속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연도별 이월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명시이월	45,061	86,730	82,507	88,118
사고이월	43,009	42,987	34,913	62,367
계속비이월	29,516	52,796	29,038	13,553
합계	117,586	182,513	146,458	164,038

<장기계속계약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492	70	장기계속계약 건축공사로 준공 시기 미도래
전의면 서정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889	9	장기계속공사로 준공 시기 미도래
금남면 부용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581	109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 미도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건립	6,721	5,995	'24년 상반기 센터 착공 예정에 따른 공사비 이월
양화하취수장 시설개선	9,620	2,833	공정계획에 따라 이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165	416	준공 미도래

□ 문제점

- 2023회계연도 이월액 규모는 164,038백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6.8%로 과도한 수준임
- 계속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 사항

-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을 조기집행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
- 명시이월사업 중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등)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세출예산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지역균형발전과, 자원순환과)

□ 현황

- 2022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 중 아래의 2개 사업은 2023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비 2023년 불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액	통계목	전년도 사고이월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지역균형 발전과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	자산 취득 및 물품 취득비	82,793	5,501	5,501	77,292	시설 준공 후 예측하지 못한 운영물품 추가구매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월 후 불용처리
자 원 순환과	청소장비 관리		339,418	308,241	308,241	31,176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등 추가 상황 발생에 대비 하여 예비적으로 이월후 불용처리
계			422,211	313,742	313,742	108,468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서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한하여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 중 위 2개 사업은 2023회계 연도로 사고이월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추가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액(313,742천원) 보다 108,468천원을 추가하여 이월 후 불용처리 함

□ 개선 및 권고 사항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11 예산 전용 최소화 노력 필요(운영지원과 등 8개 부서)

□ 현황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나,
 -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등에 따라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2023회계연도 결산시 예산전용은 10건(8개 부서*)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하였으나 2021회계연도와 비교시 건수가 많은 편임
- * 운영지원과, 농업정책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행정과, 공원관리과

<최근 3년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전용금액	건수	전용금액	건수	전용금액
계	5	305,626	18	497,127	10	333,148
일반회계	5	305,626	18	497,127	10	333,148

□ 문제점

- 예산 편성 시 집행을 고려하여 통계목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산을 수립 하여야하나 일부부서에는 과목 변경을 위하여 전용하여 지출하거나
- 사업계획 변경·요구증감액 작성 오류 수정 등을 사유로 예산을 전용함

□ 개선 및 권고 사항

-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추계를 보다 정확히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집행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권고

12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누락(농업정책과)

□ 현황

- 장기간의 건설(또는 취득과정)이 필요한 자산은 건설중인자산으로 기록한 후 건설이 준공되거나 자산을 취득할 때 건설중인자산을 해당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함
- 2021년 12월 완료된 “하봉2리 CCTV설치공사”와 관련된 건설중인자산을 본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대체조서 작성을 누락함

□ 문제점

- 건설중인자산은 준공(또는 취득) 전까지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완공되어 대체 시까지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고, 본계정으로 대체 처리 후에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함
- “하봉2리 CCTV설치공사”는 대체조서 작성이 누락되어 건설중인자산이 49백만원이 과대 계상되고, 기타사회기반시설(구축물) 자산 및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점 발생

□ 개선 및 권고 사항

- 재정상태표 상의 건설중인자산 금액은 당해연도 말 실제 진행중인 건설중인가공사에 대해서만 금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그 외 건설중인자산은 본계정 대체(자산등재) 혹은 비용처리를 하여야 함
- 준공시 대체하지 않을 경우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13 성인지 예산사업 사업유형 분류 철저(예산담당관)

□ 현 황

-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일반회계 51개 사업 562억원이며, 예산현액 562억원 중 지출액은 527억원으로 집행률은 93.8%임
- 사업별 집행실적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13개)은 예산현액 150억원 중 147억원을 지출(97.7%)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사업(38개)은 예산현액 412억원 중 380억원을 지출(92.3%)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51	56,202	52,706	93.8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소계	13	15,020	14,670	97.7
	일반회계	13	15,020	14,670	97.7
	기타특별회계	-	-	-	-
	기금	-	-	-	-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계	38	41,182	38,036	92.3
	일반회계	38	41,182	38,036	92.3
	기타특별회계	-	-	-	-
	기금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	-	-	-
	일반회계	-	-	-	-
	기타특별회계	-	-	-	-
	기금	-	-	-	-

* 2022회계연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9), 성별영향평가사업(48), 자치단체특화사업(5)

□ 문제점

- 성인지 사업은 성인지예산편성 지침('23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사업 유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아래 사업은 세 유형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에 동일한 사업임에도 분류를 달리하고 있음

<'23년 성인지 예산 사업 중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분류 가능한 사업>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천원)	대상사업유형	
			'22년도	'23년도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480,580	자치단체특화사업	양성평등정책추진

※ 양성평등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분류 기준

- ① **양성평등사업**은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등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는 사업
- ②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성평등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이되,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
- ③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지자체 주력사업 중 성 불평등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

□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성과와 효율성 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분류에 일관성 기할 것

14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자체노력 철저(전부서)

□ 현황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최근 3년간 산정내역의 자체노력액 반영 현황은 2022년은 17,968백만원, 2023년은 5,550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2024년은 20,609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아 최근 3년간 자체 노력 반영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재정수요·수입액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재정수요 반영액①	8,369	2,463	- 7,519
기준재정수입 반영액②	- 9,599	- 3,087	13,090
자체노력 반영액(①-②)	17,968	5,550	- 20,609

* (+) 인센티브, (-)페널티

□ 문제점

-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을 산정한 것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많을수록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많아지므로, 자체노력반영 항목의 수요액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 그러나, 최근 3년간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액은 2022년은 8,369백만원, 2023년은 2,463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2024년은 7,519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음

- 페널티 주요내역을 보면 2024년도에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이 7,248백만원으로 가장 크고, 예산집행 노력은 2,929백만원으로 이월액·불용액이 많은 것 등으로 나타나 자체노력수요액 반영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8,369	2,463	- 7,519
인건비 건전운영		3,303	6,121	3,547
지방의회경비 절감		198	271	203
업무추진비 절감		316	554	322
행사축제성경비절감		2,000	393	- 7,248
지방보조금절감		4,152	- 1,449	- 1,414
예산집행노력 소계		- 1,600	- 3,427	- 2,929
	이월액	- 817	- 2,187	- 277
	불용액	- 783	- 1,240	- 2,652

※ (+) 인센티브, (-)페널티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교부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세금 등의 수입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적을수록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많아지므로 자체노력 반영 항목의 수입액이 적어지게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나
- 세종특별자치시의 최근 3년간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액은 2022년은 △9,599백만원, 2023년은 △3,087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2024년은 13,090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음

- 페널티 내역을 보면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 13,399백만원, 지방세징수율제고 8,296백만원, 세외수입체납액축소 4,728백만원으로 지방세 등 체납액이 크고, 징수율이 낮아 자체노력 수입액 반영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소계		- 9,599	- 3,087	13,090
지방세징수율제고		- 6,856	1,893	8,296
지방세체납액축소		2,516	7,498	13,399
경상세외수입확충		- 7,240	- 12,354	- 14,186
세외수입체납액축소		1,229	- 926	4,728
탄력세율적용 소계		752	802	853
	주민세	752	802	853
	기타	-	-	-

※ (-) 인센티브, (+)페널티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 개선 및 권고 사항

-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항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 인센티브가 되는 항목은 최대한 크게, 페널티가 되는 항목은 최대한 적게 하는 노력을 하기 바람

15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교통과)

□ 현황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사업비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원칙임

□ 문제점

- 202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비” 400,000천원을 사업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이월담당부서인 예산담당관실로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으나
- 요구예산액 중 계약한 설계용역비 20,729천원만 요구내용과 다르게 사고이월 처리됨
- 설계용역 완료 후 실제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사업비 379,271천원은 결산상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 처리되어 사실상 불용됨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하는 등 예산 운영에 있어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사례에 해당

<명시이월대상사업비 불용처리 현황>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액	지출액	명시이월 요구액	실제이월액 (사고이월)	불용액
시설비	400,000	-	400,000	20,729	379,271

□ 개선 및 권고사항

- 편성된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월조치하여, 사업비가 불용되고 신규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

16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세입 처리 시 오류(예산담당관)

□ 현황

-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예탁 시, 기금에서는 예탁금으로 세출 처리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수금으로 세입 처리함
- 따라서 결산서상 기금 예탁금과 일반회계 예수금은 서로 일치하여야 함

□ 문제점

-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7,700백만원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전액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으로 세입 처리되어야 하나,
- 세입 과목을 잘못 지정하여,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으로는 3,750백만원만 처리하고, 나머지(3,949백만원)는 ‘예수금수입’으로 처리함
- 이로 인해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2개 기금의 예수금이 기금 결산서상 예탁금과 불일치함(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천원)

자금 송금처	자금 수신처	기금 결산서상 예탁금(A)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예수금(B)	불일치 금액 (A-B)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7,700,000	3,750,469	3,949,5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일반회계	262,812,231	266,761,762	△3,949,531
합 계		270,512,231	270,512,231	0

□ 시정요구

-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지역개발기금의 예수금 세입과목 오류에 대한 수정 필요

17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상 기재사항 누락(건축과)

□ 현황

- 행안부 통합 결산기준에 따르면,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에는 각 기금별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연도, 운용관서, 재원조달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행안부 결산 통합기준 책자 (31쪽 발췌)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항 목	내용설명	작성요령
•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 기금별로 그 기금의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연도, 운용관서, 재원조달, 당해연도 사용액의 사유, 기금보관상황과 당해연도말 조성액을 작성

□ 문제점

- 2023회계연도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상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설치근거, 설치 목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시정요구

-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상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가 빠짐없이 기재되도록 수정 요구

18 관련 법령 해석 오류로 예산 편성 부적정(세정과)

□ 현황

-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
- 정부는 2022. 12. 21.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 대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은 완료되지 못하고 최종 실패하였는 바, 예산도 현행 법률에 의거 편성하여야 함
- 위 대책 발표 당시 배포된 행안부의 안내자료를 보면, 법령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고, 나중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때 환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음

2022. 12. 22. 행안부 배포 민원 안내자료 4쪽 발췌

⑤ 대책발표일('22.12.21.)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과 세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완화된 세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중과세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중과세율로 신고해야 하고, 향후 법이 개정되는 경우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환급될 예정입니다.

※ 입법 완료 후 과세 관청에서 환급 관련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다만, 지방세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을 전제로 하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

- 법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의 위 민원 안내자료를 잘못 해석하여 당초 5억원인 본예산 금액을 추경 시 6억원을 감액하여 최종 △1억원의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발취)

과목 장·관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㉒	예산현액 ㉑+㉒	징수 결정액㉓	수납액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내부거래	523,597,112,000		523,597,112,000	517,416,291,730	517,416,291,730			517,416,291,730
일 반 회 계	1,833,708,083,000	128,410,907,561	1,932,118,990,561	1,976,660,644,400	1,946,483,420,795		19,559,839,096	1,926,923,581,699
지방세수입	755,205,711,000		755,205,711,000	809,984,315,160	755,095,581,940		18,665,908,640	776,429,673,300
지 난 년 도 수 입	△ 100,000,000		△ 100,000,000	17,442,403,240	12,076,089,890		11,499,196,730	576,883,160

-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만 믿고 미리 감액 추경한 것은 ‘막연한 예측에 입각한 예산 편성’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19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부적정(건축과)

□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함
- 또한, 동 조례 제3항에 따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 문제점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직접 예치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4조제2항을 위반함
-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동 조례 제3항을 위반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여유재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시기 바람
-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립기금·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구분·관리하시기 바람
- 만약, 현재와 같이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함

20 도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 시, 감액 처리 철저(회계과)

□ 현황

- 행안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일상적인 개·보수 작업과 대규모 교체 작업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다르게 하여야 함
 - (일상적인 개·보수 작업 해당 시) 수선유지비로 처리
 - (대규모 교체 작업 해당 시) 교체 작업으로 제거되는 부분(기존 도로)에 대한 금액을 감액(減額)한 다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은 신규 취득으로 봐서 가산함(先 감액 後 신설)

행안부 지자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 (237쪽 발췌)

- ③ 도로는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도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한다.

□ 문제점

- 세종시는 도로와 관련해 일상적인 개·보수 작업과 대규모 교체 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와 관련된 개·보수는 전부 일상적인 개·보수 작업으로 간주하여 수선유지비로 처리
- 결과적으로, 기존 도로에 대한 대규모 교체 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도 일상적인 개·보수 작업으로 잘못 분류됨으로써, 제거되는 도로 부분에 대한 감액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복식부기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상 중 도로 부분 발췌>

(단위 : 백만원)

과 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내부거래	계
도 로	3,184,582	31,614	340	-	-	3,216,536

□ 개선 및 권고사항

- 우선, 행안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르면 일상적인 개·보수 작업과 대규모 교체 작업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므로, 일상적인 개·보수 작업인지, 아니면 대규모 교체 작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둘째, 위 판단기준에 따라 대규모 교체 작업으로 판단되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지 말고, 그 공사로 제거되는 기존 도로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처리한 후, 새로 설치되는 부분을 가산할 것을 권고

21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검토 필요(회계과)

□ 현황

- 부속명세서 중 일반유형자산 명세서, 주민편의시설 명세서 및 사회기반시설 명세서를 살펴보면, 2023년도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5,600억원 이상 대규모로 처분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회 계	기초잔액	증가액	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비	기타(처분액)	
일반유형자산	672,224	130,723	24,050	61,563	723,333
주민편의시설	2,580,208	472,122	41,169	375,825	2,635,336
사회기반시설	5,596,621	222,613	74,868	126,986	5,617,380
합 계	8,849,053	825,458	140,087	564,374	8,976,049

□ 문제점

- 유형자산 처분(폐기 포함) 시, 세종시가 수령하는 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다소 모호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처분손익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처분가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람

1) 이 금액은 취득가액 기준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장부가액(book-value)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서, 세종시가 이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큰 금액일 것임

22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전략기획과 등 3개 부서

□ 현황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건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우리시 예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345개 중 초과달성 49개 (130% 이상), 달성 278개(100~130% 미만), 미달성 18개(100% 미만)로 94.78%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성 과 목 표 (단위:개)						결 산 액 (단위:백만원)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9	182	345	49	278	18	1,987,858	1,977,908	9,950

- (성과지표) 한글문화수도 기반 구축

- 달성도: 초과 달성(130%)
- 성과분석: 사업추진 중 수요 증가

전략기획과	한글문화수도 기반 구축	한글사랑거리 간판 개선	목표	10	·간판개선사업 구역 내 수요 조사 실시를 통해 목표 설정 ·사업추진 중 수요 증가
			실적	13	
			달성률	130%	

- (성과지표) 체육시설 환경개선, 체육시설 운영실적

- 달성도: 초과 달성(각 132%, 199%)
- 성과분석: 신규 인수 체육시설에 따른 지표상승 및 안전점검 횟수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이용자 급증

시설관리 사업소 (체육시설과)	체육시설 환경개선 실적(%)	(공공체육시설 시설개선 및 보수건수/50회)×35+ (수영장위탁실적건수/5 회)×35+(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횟수/ 96회)×30	목표	100	·신규 인수 체육시설에 따른 전 체적 지표 상승 ·최근 2년 간의 각종 안전재난 이후 안전 관련 사항이 중요시 되어 안전점검 횟수 급증 ·코로나로 성장이 둔화한 체육 시설 이용자 수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급증
			실적	132	
			달성률	132%	
	체육시설 운영실적 (%)	(체육시설 이용자수 /150천명)×50+(사용 료징수액/12억 원)×50	목표	100	
			실적	199	
			달성률	199%	

- (성과지표) 합강캠핑장 이용객 만족도 조사 예산

- 달성도: 미달성
- 성과분석: 호우피해로 인한 캠핑장 휴장으로 만족도 조사 미 실시

물관리정책과	세종합강캠핑 장 이용객 만 족도 제고(%)	만족 이용객수/설문 조사 이용객수×100	목표	90	호우 피해로 캠핑장 휴장, 이용자 만족도조사 미 실시
			실적	0	
			달성률	0%	

□ 문제점

○ (성과지표) 한글문화수도 기반 구축

- 당초 본예산 편성 때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수립했다면 사업추진 중 수요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10건 실적을 목표로 수립한 예산으로 13건의 실적을 거뒀다면 처음부터 13건이 가능했다는 것이며 이는 곧 처음부터 예산 편성의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성과지표) 체육시설 환경개선, 체육시설 운영실적

- 체육시설 신규 인수와 안전점검 횟수 증가는 예산편성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환경적 요인임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역시 코로나 진정세에 따라 2022년 4월

이뤄진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자 수 급증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음

- 즉 제시된 사유들은 목표 실적 초과달성의 근거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애초에 예산 성과지표 설정의 정확성과 적절성 자체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합강캠핑장 이용객 만족도 조사 예산

- 상시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용객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해 캠핑장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이용객 불만 요소를 발굴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필요
- 연말 연 1회 이뤄지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만족도 조사는 '합강캠핑장 이용객 만족도 제고'라는 성과지표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산식이 될 수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종합의견

-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를 위주로 정책사업 목표, 투입 및 산출의 결과 산식을 구체화하여 결과지표를 설정할 필요
- 과거실적이 목표값과 단위가 다를 시 증가율로 기재 필요
- 지표산식과 산식 설명/목표값 부분이 일치하도록 할 필요
- 성과지표는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조직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지표.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성과보고서가 되지 않고 결과 간 피드백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와 예산, 성과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를 설정할 것
-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고 부득이한 수정 사항이 있을 시 지표 변경을 할 것을 권고

- 1 「중기부 지역특화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국비 확보(경제장책과) ... 57
- 2 재난경험자 마음구호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사회재난과) 58
- 3 중복 시공 구간 통합 시공을 통한 예산 절감(상하수도사업소) 59
- 4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자원순환과) 61
- 5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처리효율 증대로 예산절감(자원순환과) ... 63
- 6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시민소통과) 64
- 7 정보통신 공공요금 절감으로 건전재정 기여(정보통계담당관) ... 65
- 8 시민안심보험 확대 운영(안전정책과) 66
- 9 사전예방 중심의 집중 방역체제 전환(농업기술센터) 67
- 10 예술인 재능기부를 통한 음악회 예산 절감(문화예술과) 68
- 11 신속한 복구예산 확보 및 민·관 협력 추진(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 69

1 「중기부 지역특화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국비 확보

중기부에서 기획·공모한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사업 선정으로 국비 273억 확보 및 우리시 정보보호산업 집중 육성

□ 추진배경

-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사업을 지자체에서 기획하고 중기부에서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 사업으로,
 - SW기업의 사이버보안 분야 전환 및 사업 다각화 지원을 통한 세종시 사이버보안산업 생태계 조성

□ 추진현황

- 우리시 기획안 발굴: '23.9월
- 기획안 제출(市→중기부) 및 평가·선정: '23.10월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 '24.2월 / 관내 총 44개사

<세종 지역특화프로젝트 사업개요>

- (사업명) 세종 SW기업 사이버보안 분야 전환 및 사업 다각화 지원
- (사업기간) 2024 ~ 2026 / 3년간
- (총사업비) 27,348백만원(전액국비)
- (지원대상) 세종시 소재 지역중소기업(본사,지사,연구소,공장 등)으로서 사이버보안 기업 및 관련분야 전환 예정 기업
- (사업내용) 세종시 사이버보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추진성과

- (국비를 활용한 전략산업 육성) 국비 273억 확보로 3년간 미래전략 산업 선도도시 세종을 위한 사이버보안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향후 추진계획

- 세종 지역특화프로젝트 최종 지원기업 선정: ~'24.4월 / 중기부(주관기관)

2 재난경험자 마음구호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재난경험자를 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년도 사업 대비 수혜자의 수를 증대하는 효과 달성

□ 추진배경

- 집중호우, 화재 등 다양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재난을 경험한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회복력의 중요성 강조
-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안정과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지원

□ 추진내용

- 기존까지 일회성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을 월 1회 상시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 부여
 - ※ '22년 1박2일 워크숍(연 1회) → '23년 당일 체험프로그램(월 1회/총 11회)
- 재난 경험자의 심리회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구성
 -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상담활동가, 행정안전부 마음구호 프로그램 교안 활용
- 기존 내담자로 대상자 한정이 아닌 새로운 대상자 발굴
 - ※ 신청자 모집 공고(홈페이지 등) 및 홍보를 통한 신청 접수

□ 추진성과

- '23년도 마음구호 프로그램 11회 운영, 총 206명 참석 (※ '22년 19명)
- '23년도 상반기 마음구호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4년도 마음구호 프로그램 예산(국비 2백만원) 추가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24년도 월 1회 상시프로그램 외에 상·하반기 특별프로그램 추가 운영

3 중복 시공 구간 통합 시공을 통한 예산 절감

상하수도사업소와 산업입지과 관로 중복 구간 공정에 대해 병행 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 단축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 추진배경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예정이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산업입지과에서 추진하는 산단 용수관로 사업구간이 일부 중복
* (중복구간) 전동면 송성3리 등 6개 마을 / L=6.6km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市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추진현황

- 관로 중복시공과 관련한 실무 회의 개최(5회) 결과 전동3지구 5.7km 중복구간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통합 시공, 전동2지구 0.9km 중복구간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과'에서 통합 시공 결정
- 관로 중복통합시공에 따라 추가 행정절차*가 발생하였으나, 사전 준비로 신속 처리 완료
* 설계서 통합, 설계VE 용역 시행, 건설공사기술심의 등

□ 추진성과

- 관로 중복구간 통합 시공으로 예산(45억원) 절감(사업비 174억원 → 129억)
- 공사기간 단축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구분	구간	사업비(억원)		
		개별발주	통합시행	절감액
계		174.6	129.2	45.4
공사비	전동2지구 중복구간	5.4	4.7	0.7
	전동3지구 중복구간	132	116	16
통합건설사업관리	전동2·3	37.2	8.5	28.7

통합시공 검토 자료

- 전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중복시공구간 - 원인자부담금 부과 검토보고

□ 사업현황

- 전동면 농어촌생활옹수 개발사업(전동2지구) 외 1개 사업과 스마트 그린·벤치벨리 산단 용수관로 공사구간 중복으로 공사 계획 조정
⇒ 동일 차선 내 관로 매설 위치시기 조정 및 통합시공으로 예산 절감 및 주민 불편 최소화

※ 투자유치과-상하수도과 협의('22.10.14)에 따라 전통2지구 중복구간은 산업입지와 시행, 전통3지구 중복구간은 상하수도사업소 시행

<중복구간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전통민 농어촌생활수계발사업(전통2지구)	전통민 농어촌생활수계발사업(전통3지구)
위치	미국·청암·송성	보덕·송곡·송정
연장	29.5km	29.1km
기간	'23 ~ '24	'23 ~ '25
사업비	66억	105억(산하보통)
중복구간/사업비	0.9km(송성2리)	5.7km(보덕·송곡·송정)
중복구간 사업시행	산업임지과 시행(상수도구간 0.94억)	상수도과 시행(산하구간 40억)

☐ **부과내용**

- **(부과목적)**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단 용수관로 매설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함
 - **(총부과액) 3,139백만원**
 - 1차 부과액(금회 부과) : 2,900백만원
 - 2차 부과액(정산 부과*) : 239백만원(금액변동 가능)
- * 부과금액은 사업 추진중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증복관로 시공 완료 후 최종 정산에점임

○ (산출근거)

(단위:백만원)

사업시행	사업내용	금액	비고
부과액(A-B)		3,139	
상하수도사업소	계(A)	4,031	
	전통3지구 중부 구간 (산단 생활공수+공급업종수)		토목·기계·폐기물
산업임지과	계(B)	892	
	전통2지구 중부 구간 (동어촌 생활공수)	94	토목·기계·폐기물
	통합간선헌리	717	
	GIS	80	

※세부내용 : 붙임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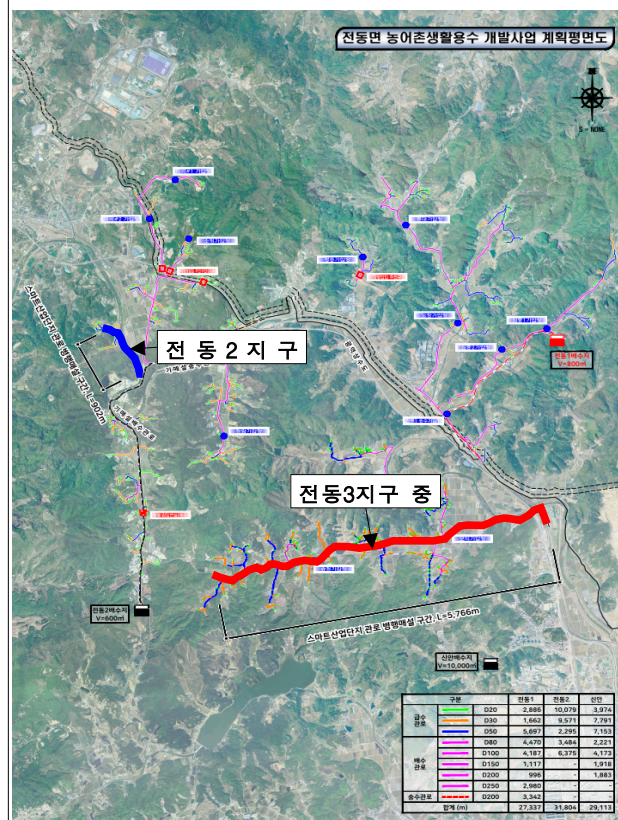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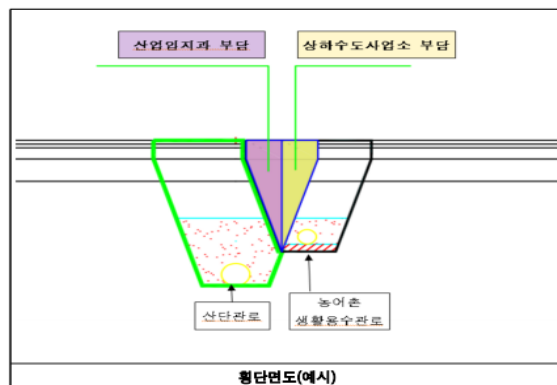
-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납부('23.6월)
- 사업 추진('23.6월~)
- 사업 완료 및 정산('25.6월~)

참고1 중복구간 사업시행 범위 및 사업비 부담(안)

☐ 사업시행범위

-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
 - 전동3지구 중북구간 공사(토목기계·폐기물)
- **산업입지과**
 - 전동2지구 중북구간 공사(토목기계·폐기물)
 - 전동2지구·전동3지구 중북구간 GIS DB 구축용역
 - 전동2지구·전동3지구 중북구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중복구간 사업비 부담[안]



4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우체통·수거함)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로 폐의약품 분리·배출률 증대 및 수거 대행비 예산 절감

□ 추진배경

- 기존 폐의약품 배출(약국, 보건소 방문 배출)은 약국의 수거 거부, 보건소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시민 불편 및 혼합 배출 초래
- 폐의약품 배출 방법 인식 부족으로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 하수구 배출, 가정 내 방치 등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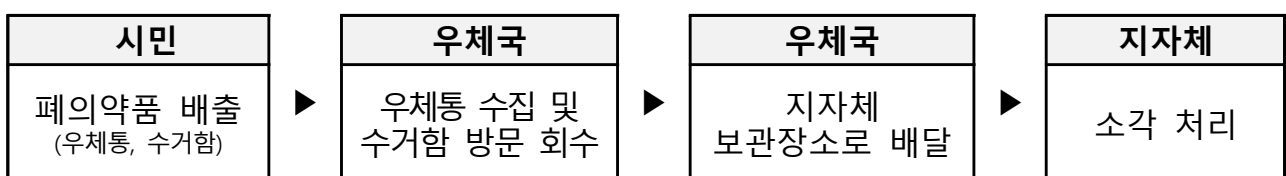
□ 추진현황

-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22.12.)

세종시	폐의약품 처리 주관 및 총괄	세종시 약사회	폐의약품 배출협조
환경부	폐의약품 회수처리 행정지원 및 제도정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 및 회수봉투 제작 지원
우정사업 본부	폐의약품 회수 수행	우체국 공익재단	운영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원(1년)

- 기존 우편서비스 제도 내의 우체통, 우편집배원 인력을 활용하여 폐의약품 회수 실시('23년~)
 - 시민이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이나 우체통에 배출하면 우체국에서 회수하여 배송

< 폐의약품 회수 처리방법 >



□ 추진성과

- 전국최초로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실시('23.~)
 - ※ '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우편집배원 인력 활용으로 수거대행비 예산 약 251백만원 절감
- 폐의약품 월평균 수거량 112% 증가로 환경오염 예방
- 폐의약품 수거처 확대로 시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 증대
 - ※ 기존 186개소(약국, 보건소) → 241개소(우체통, 주민센터 추가)
- 세종시의 선진사례가 타 지자체로 확산 효과
 - ※ 서울('23.7~), 나주('23.8~) 시행 / 환경부에서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활성화사업 참여 지자체 수요조사 시행(환경부, 2024.2.22.)

□ 향후 추진계획

-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지속 추진
- 시민 배출 편의를 위해 조제약 봉투를 폐의약품 배출 봉투로 재활용하는 방안 검토

5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처리효율 증대로 예산절감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연소개선제를 투입·운영하여 연소효율 증가 및 예산절감 효과 달성

□ 추진배경

-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2009년도 준공)의 시설노후화 및 처리용량(45톤/일) 한계로 인해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각량 감소
- 이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잉여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 발생

□ 추진현황

-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해 연소개선제(물, 과불산나트륨, 글리세린) 투입 시범 운영('23.7~9)
 - ※ 연소효율 증가로 소각량 증가 및 CO량 감소 효과 확인
- 연소개선제 납품계약을 추진하여 지속 사용('23.10~)

□ 추진성과

- 연소개선제 투입 후 소각물량이 6개월간 약 502톤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잉여폐기물처리비가 약 103백만원 절감 효과
 - ※ 연소개선제 투입 후 소각량 변화 : 39.43톤/일 → 42.55톤/일

□ 향후 추진계획

- 연소개선제 지속 사용을 통한 처리 효율 증대 제고
- 연소개선제 성능검증을 위해 처리실적(소각량, 환경오염물질량, 바닥재량) 지속 모니터링

6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고향사랑기부제 운영('23년~)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145백만원 모금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 추진배경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전국적 시행

□ 추진현황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민관 회의체 구성·운영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23. 4. 11.) 및 회의 개최(3회)
 -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 운영(3회) 및 답례품 선정(22개 업체, 31개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 고향사랑의날 박람회 홍보 부스('23.9월), 관내·외(서울, 대전, 정부세종청사 등) 광고 및 홍보 캠페인('23.4~10월), 홍보 대사 위촉 및 홍보 영상 제작·송출
- 기부자와의 관계인구 형성을 위해 답례품 배송 시 감사서한문 및 관광지도 동봉 발송 및 희망자에게 매월 세종소식지 제공

□ 추진성과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145백만원 모금(1,587건)
 -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1억원) 대비 초과 달성(145%)

□ 향후 추진계획

- 답례품 발굴 및 찾아가는 홍보, 기금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부금 모금 확대
 - ※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2억원

7 정보통신 공공요금 절감으로 건전재정 기여

市の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출 절감 노력을 통한 건전재정 제고

□ 추진배경

- 市 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부 사업소 임대 전용회선(KT 등) 비용 증가
- 대시민 문자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의 지속적인 증가
 - * 부서별 행정정보 안내메시지, 대기오염정보, 스마트시민 소통 채널 등

□ 추진현황

- 자가정보통신망 연계 가능한 신설 사업소 등 통신공사 추진
 - 시민운동장, 도토리파크, 시립도서관, 고운동 남측복합, 나성동 복합
- 통합메시징 전송시스템의 현재 사용량과 타 시·도 사용량 대비 단가를 비교하여 이동통신사와 단가협상을 통한 직접계약* 추진
 - * 기존 대행사업자와 단가조정이 어려워 통신3사 가격비교 및 이동통신사와 직접 협상

□ 추진성과

- 신규 사업소 5개소에 광케이블 인입 통신공사를 추진하여 기존 KT전용회선(10M 저속)을 고품질 광대역(100M) 자가정보통신망으로 제공
 - KT 전용회선 연간 사용요금 80,255천원(5개소) 절감 및 속도 개선
- 문자메시지 사용료(장문, 단문, 이미지형) 단가 조정을 통해 기존 단가 대비 17,129천원(8개월 기준) 절감
 - 문자사용량 증가비율 반영시 향후 5년간 총 499,024천원 절감 예상

□ 향후 추진계획

- 자가정보통신망 확충을 통한 회선료 절감 및 통신회선 독립성 확보
- 향후 문자메시지 사용료 단가인하 요인이 추가 발생시 단가 재협상

8 시민안심보험 확대 운영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생활 안정 도모

□ 추진배경

-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심보험 운영('19.4.~)
- 보장 항목이 제한되어 낙상·열상 등 빈번한 사고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사회재난 사망' 등 항목 추가 희망

* ('23.2)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시민안심보험 평가 및 선호도 조사 추진

□ 추진현황

- 정부 보장사업·지원제도 등과 중복된 보장 항목* 및 발생빈도가 저조한 항목** 등을 제외하여 보험 비용 대비 효과성 제고('23.7.~)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중복),
▲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중복)

** ▲ 의료사고 법률지원('19~'22년 보상사례 전무)

□ 추진성과

- (피해자 지원 확대) 포괄적 상해보상 등 폭넓은 범위의 보장 가능 항목을 추가*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신규 보장항목 3종: 사회재난사망,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 보장항목 추가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

※ '23.12. 감전사고의 경우, 보장항목 추가로 지원금액 증가 (기존 1천만원 → 항목추가 3천만원)

- (보험금 지급 현황) 총 53건, 159,700천원 지급('24. 2월말 기준)

- ('19년) 2건 1,050만원, ('20년) 1건 90만원, ('21년) 2건 2,000만원,
('22년) 10건 330만원, ('23년) 27건 3,480만원, ('24년) 11건 9,020만원

9 사전예방 중심의 집중 방역체제 전환

사전예방 중심의 집중방역체제 전환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국비 확보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 제고

□ 추진배경

- 전국 인과류(사과·배 등) 재배농가에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로 병 확산을 방지, 안전 영농 도모

□ 추진현황 및 성과

- **(종합방제 체계 구축)** 디지털 예찰방제 기술 도입 및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
- **(병해충 전담인력 확충)** 방제기술의 현장이행을 위한 식물방역 인력확대
 - 과수화상병 상시 대응반(과수기술팀) + 병해충 예찰·방제단(3명 채용)
- **(사전예방)** 궤양 등 전염원 사전제거, 적기방제 활동 강화, 농가신고제 운영,
 - 사전예방 중심의 집중방역체제 전환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 화상병 발생 시 공적방제(매물 및 폐원 등) 비용 등 손실보상금 예산 절감
- **(정부합동평가 목표달성)** 3-13-72. ㉠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적
 - ▶ 2015년 국내 과수화상병 최초 발생 후 2024년 현재까지 **‘세종시 미발생’**

□ 향후 추진계획

- 화상병 무인예측시스템 운영으로 적기방제 정보제공 및 방제체계 보완
 - 기존 과수 병해충 관측장비 9개소 + 화상병 예측시스템 10개소(23년 구축)
* 적기방제 통보(과수 등 1,000농가), 궤양 등 전염원 사전제거, 농가신고제 운영
- 신속한 병해충 진단 및 처방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과학적인 진단장비(PH, EC, 스마트진단키트) 활용 영농현장 처방 지도

10 예술인 재능기부를 통한 음악회 예산 절감

지역 예술인 재능기부로 소요예산 없이 음악회를 진행하여 시 직원, 출입 시민에게 문화향유기회 제공 및 예산 절감 효과 증대

□ 추진배경

- 직원·시민에게 점심시간을 활용한 힐링 기회를 제공하고자 市와 재능기부자가 협의하여 기업후원을 받아 음악회를 개최기로 함
- 격무에 시달리는 시 직원과 시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 공연을 통해 볼거리 및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

□ 추진현황

- 매월 1회 점심시간(12:30~13:00)을 이용해 시청사 1층 로비에서 음악회 공연('23.9월~ / 총6회)
- 재능기부자(예술감독 타이틀 부여)가 세종 및 인근 지역 예술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 예술인을 직접 섭외하여 프로그램 구성
 - 성악, 트리오 공연, 국악 등 다양한 고품격 공연 제공

□ 추진성과

- 피아노, 기타, 성악, 국악 등 다양한 음악공연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시 직원과 출입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비예산 사업으로 기업들의 문화메세나 사업을 통해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무료 음악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민관협업 사례로 자리매김함

□ 향후 추진계획

- 매월 1회(셋째주 수요일) 나눔 음악회 개최 지속 추진

11 신속한 복구예산 확보 및 민·관 협력 추진(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호우 피해 발생('23.6.27~7.27)에 대한 市 피해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철저한 피해조사 실시 및 신속한 복구 예산(국비·예비비·기금) 확보

□ 추진배경

-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23.7.18)
 - 공공 320건 22,888백만원, 사유 889명 1,821백만원 피해액 발생
- 시민의 생계안정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피해조사 및 신속한 복구 추진 필요

□ 추진현황

- 市 재난피해조사단 구성·운영(18분야 25명)으로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한 국고보조금 복구비 확보(36,183백만원) 및 중앙합동조사단 현장 대응('23.7월)
 - ※ 피해조사기간(공공7일, 사유10일) 내 미입력된 피해는 시 자체 복구
- 민·관·군 3,000여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재해 응급 복구 추진

□ 추진성과

- (철저한 피해조사 및 국비 확보) 적극적인 피해조사로 국고보조금 확보 및 예비비·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복구비 재원 사전 확보
 - ※ 공공시설 복구비 54,861백만원(국34,696, 시20,165), 사유시설 2,186백만원
- 시민의 생계안정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 인명·주택·소상공인·농임업 등 사유시설 피해 시민에게 추석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23.8~9월/889명, 2,186백만원)
- (조기 복구·예산절감) 민·관·군 협력하여 신속한 복구 추진으로 예산 절감

□ 향후계획

- 재해복구 추진 T/F운영(9개반 52명) 및 미준공 복구사업 추진상황 관리
 - ※ '24년 3월말 기준 194건(60%) 준공, 6월말 기준 305건(95%) 준공 예정

7.9~19 호우 피해 세종시 재난피해조사단 운영 계획

◆ 7.9~19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세종시재난피해조사단을 편성·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 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6조
 - *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운영

□ 추진 방향

-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은 '2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수립
- 1차 피해 입력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분야별 조사결과 타당성, 피해 물량, 복구방안 등 적정성 검토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방문시 현장 대응팀 구성
- 피해 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 참여로 피해 허위·과장, 피해 내역 누락 방지

□ 조사 계획

- (조사 기간) '23.7.26(수)~8.4(금) * 조사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조사 대상) 공공·사유 피해 시설
- (조사단 구성) 도로, 하천, 산림, 농업, 주택 등 주요 시설 피해 분야별 구성하여 조사 실시

합 계	도로	하천	산림(임업)	주택	소상공인	농업	축산	문화재	기타시설
25	2	3	2	1	1	3	1	1	11

* 체육, 교육, 공원, 통신,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기타 시설물 피해

□ 조사단 임무 및 역할

- 피해현황 현장 조사 및 확인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및 복구 입력 지원
 - 피해 조사결과 타당성, 피해물량, 복구물량 등 적정성 검토
- 피해 원인 분석 및 복구계획 방안 검토
- 재난사고 관련 정보 수집·정리 등

□ 피해 현황

- (공공시설) 276건/ 피해액 25,263백만원 * 7.25 18시 NDMS 입력기준

합 계	하천	도로	소하천	수리시설	산사태(임도)	상하수도	소규모시설	기타
276	56	16	23	8	31	10	107	25

* 하천(하천기본, 하천천수시설), 도로(국도, 지방도, 교량)

- (사유시설) 403건/ 피해액 719백만원

합 계	주택	소상공인	농작물	농경지	축산시설	가축	농림시설	산림	기타
403	18	8	311	33	1	2	7	17	6

* 기타(공장, 주택기타)

□ 향후 계획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결과 적정성 검토
- 지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따른 현장 안내 및 대응(붙임1)
 - *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기간 7.29~8.4

자연재난과-10808(2023.7.26.)

- '23.6.27~7.27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 『재해복구사업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

◆ 6.27~7.27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공공시설 신속 복구·추진상황 관리 등으로 2024년 우기전 재해복구사업 완료를 위한『재해복구사업 추진 T/F』를 구성·운영 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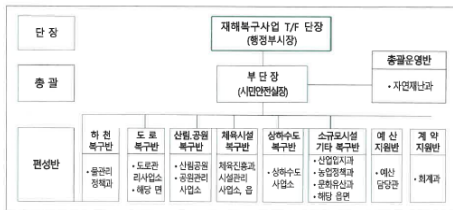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8항 및 재해복구사업 실무지침
 -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28(2023.9.20.)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TF 구성운영
- 2024년도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료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피해 재발 방지
- 재해복구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복구 기간 단축 등 시너지 효과 창출

II 중점 추진 방향

- (예산 편성·집행) 예비·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 편성 및 성립전예산(국배) 승인 절차 이행, 재해복구비 신속 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 촉진
 - *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활용한 적극 행정 유도
- (사전 심의) 중앙사전심의 대상 사업은 사실상계 완료 이전 심의 절차 이행, 근본적인 피해 원인분석, 복구공법 기술 검토 시행으로 재 피해 방지
 - * 보상비를 제외한 복구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7건)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 (조기 착수) 파업지시서 사전 준비로 신속한 시설설계용역 추진, 긴급경정입찰, 개산계약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발주 기간 단축
- (사업 관리) 복구사업 추진현황 관리(월1회), 부진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및 자연 사유 파악, 역경정제회 수립 및 관계기관 협조 등 해결방안 강구
 - 사업 초기부터 피해 주민, 전문가 등 의견 청취로 건설한 사업 추진

III 재해복구사업 추진 TF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3.10.30. ~ '24. 6.30.(우기 전까지)
- 운영대상 : 6.27~7.27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
- 구 성 : 단장 행정부시장, 9개반 52명(부서9, 사업소4, 읍·면9)



* 복구반별 사업부서는 조직개편 등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부서별 역할

- (자연재난과) 사업 진도 및 예산 집행 추진상황 총괄 관리
 -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매월 3째주), 현장 점검(연~2회) 및 추진상황 대책회의 (필요시)
- (예산 부서) 예비·성립전 예산 신속한 편성 및 관리
- (계약 부서) 재해복구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긴급입찰제도, 개산 계약 등 적극적인 절차 추진으로 기간 단축
- (감사위원회)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계약심사 제외, 사업발주 후 일상 감사 시행(30일 이내) 협조, 복구비 적법한 집행 감사
- (사업 부서) 부서별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관리, 점검 및 결과 제출, 합동점검 참여
 -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라 추진상황 점검결과 제출

자연재난과-15898(2023.10.25.)

참고2

민·관·군 협력 재해복구 수범 사례

○ 격려대상

- 기관·단체명 : 정원친화도시 세종민간추진연합회
- 대표자 주소, 성명 : 세종시 한누리대로 161, 김영제
- 대표전화 : HP 010-3308-4700

○ 수범사례(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일시: 2023. 7. 25.
- 장소: 세종시 방축천(도담동, 어진동)
- 인원: 280명
- 내용: 방축천변 토사 제거 및 보도블럭 정리, 쓰레기 수거 등



○ 격려대상

- 기관·단체명 : 세종시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5개동 자원봉사플랫폼 봉사단 등
- 대표자 주소, 성명 :
- 대표전화 :

○ 수범사례(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일시: 2023. 7. 22.
- 장소: 세종시 연동면, 금남면 등
- 인원: 150명
- 내용: 토사정리, 침수가옥 피해복구 지원



○ 격려대상

- 기관·단체명 : 세종지역운영위원회 8개 라이온스클럽
- 대표자 주소, 성명 :
- 대표전화 :

○ 수범사례(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일시: 2023. 7. 23.
- 장소: 세종시 금남면 매기양식장
- 인원: 50명
- 내용: 호우피해 양식장 수해복구 작업



(장군면) 용현리 32 산사태 토사정리(7.21.)

결정기동대 11명

【 의용소방대 】



(조치원소방서) 천의면 북암리 인근 하상도로 손질(7.14~16) 천의면 의용소방대 6명

(조치원소방서) 연서면 토사유출 도로 작업(7.15) 연서면 의용소방대 41명

(세종소방서) 미가 침수 현장 안전조치 작업(7.15.) 연서면 의용소방대 35명

(조치원소방서) 무강면 북천교 범람 대비 제방 보강작업(7.15) 부강면 의용소방대 22명

(세종소방서) 보통리 죽사 복구(7.15.) 연기면 의용소방대 4명

(세종소방서) 장군면 태불사 산사태 복구(7.15.) 장군면 의용소방대 4명

○ 격려대상

- 기관·단체명 : 용인특례시 충청향우회
- 대표자 주소, 성명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13번길 20~25 301호, 홍권표
- 대표전화 : HP 010-8640-7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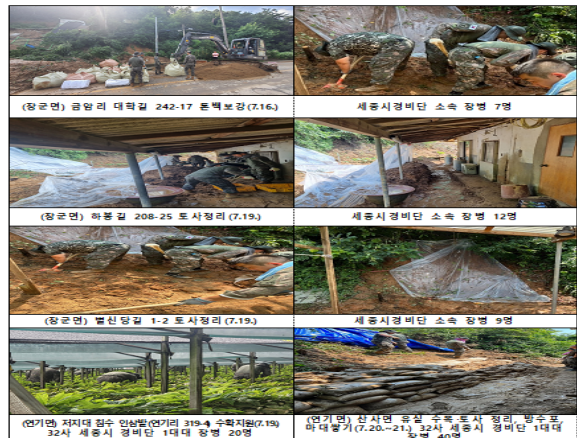
○ 수범사례(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일시: 2023. 7. 30.
- 장소: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월하리, 용암리 일대
- 인원: 30명
- 내용: 산사태 인근주택 토사제거, 유실 농경지 흙파래 쌓기, 배수로 정비 지원 등



1 자원봉사활동 [함께, 기적의 비결]

【 군, 경찰 】



(장군면) 금암리 대학길 242-17 주택보강(7.16.)

세종시경비단 소속 장병 7명

(장군면) 하동길 208-25 토사정리(7.19.)

세종시경비단 소속 장병 12명

(장군면) 불산당길 1-2 토사정리(7.19.)

세종시경비단 소속 장병 9명

(연기면) 자지대 침수 인양판(연기리 319-4 수목지점)(7.19) 32사 세종시 경비단 1대대 장병 20명

(연기면) 산서면 용실 주택 토사 정리, 방수막 하대쌓기(7.20.-21.) 32사 세종시 경비단 1대대 장병 40명